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 07. 14(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07. 02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07. 02

라. 상정일자 : 2014. 07. 10(제216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시세) 감면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감면대상자 :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내역
 - 1) 주민세 균등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 2) 자동차세 소유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세월호에 선적·멸실된 생계형 화물차량(화물차, 특수차)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이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한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 3)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한다.
 - 4) 취득세
 - 세월호사고 희생자나 실종자의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세월호 사고로 멸실 또는 파손되었고, 이에 따라 희생자 가족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기타

-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2)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깊은 실의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세(시세)를 감면 지원하는 사항으로
- 감면대상은 세월호에 승선한 인천광역시민 36명중 사망하신 16명과 실종중인 1명 등 총 17명의 가족이 되겠으며, 감면세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따라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멸실·파손된 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함께, 주민세·자동차세·취득세·재산세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되겠음.
- 예상되는 감면규모는 2013년도에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된 자료를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 5천 4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납부기한이 지난 자동차세 등 일부 해당 세목은 징수유예 처리하였음.

< 시세 세목별 감면추계 >

구 분	계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규 모 (천원)	54,094	25,000	422	7,152	268	21,252

- 본 동의안은 가족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그동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와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협조 요구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이용범 위원>

- 희생자 가족측에서 건의사항 등 있었는지?
⇒ 연세 있는 사망자가 많아 상속세 등 관련하여 가족들은 채권 채무관계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망신고도 못하고 있는 경우 있음. 채무상환 기일 중지 또는 연장하고 채무상환을 파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다른 시·도 추진상황은?
⇒ 지방정부의 문제라기 보다 은행 등 금융기관 문제라 안행부에서 조치하여 전국적으로 유예 가능 부분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소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맞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유일용 위원>

- 실종자도 같은 예우를 받는가?
⇒ 같은 예우를 받음.

○ 국세 처리는?

⇒ 국세도 유예처리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
특별법 제정되면 많은 사항이 풀릴 것으로 보여져서 가족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음.

○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혜택의 균형이 맞도록 검토바람.

⇒ 보완하여서라도 처리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차준택, 유일용, 허준, 이영훈,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부. 끝.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개정사유

- 가.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시세) 감면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감면대상자 :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세목별 감면내역

1) 주민세 균등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2) 자동차세 소유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세월호에 선적·멸실된 생계형 화물자량(화물차, 특수차)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이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한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한다.

4) 취득세

- 세월호사고 희생자나 실종자의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세월호 사고로 멸실 또는 파손되었고, 이에 따라 희생자 가족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기타

-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2)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피해현황 및 감면추계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피해현황 및 감면추계

1. 우리 시 피해현황(2014. 5. 28일 현재)

- 승선 36명, 구조 19명, 사망 16명, 실종 1명

2. 시세 세목별 감면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 방 소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육세
감면 규모	54,094	25,000	422	7,152	없음	268	21,252

※ 가족포함 63명의 2013년 부과기준 추산, 2014. 5. 28일 현재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 「지방세특례제한법」</p> <p>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③ (생략)</p> <p>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⑤~⑧ (생략)</p> <p>□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p> <p>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③ (생략)</p> <p>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p> <p>⑤~⑧ (생략)</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